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2월 24일

강동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정 *철	정 *철 1985-10-19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(산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2-15